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06
----------	-------

발의연월일 : 2019. 4. 19.

발의자 : 신보라 · 윤종필 · 이명수
성일종 · 백승주 · 문진국
조훈현 · 주광덕 · 김석기
박덕흠 · 이철규 · 김종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치료 환자수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일부지역에 몰려 있어 직장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 위해 찾 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보건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

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 략)</p> <p>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p> <p>가. ~ 사.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u>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u></p> <p>② (현행과 같음)</p>